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특별공급 안내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595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총 1,999세대 [지하1층 ~ 지상27층, 총 19개동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전용 85㎡ 이하 주택건설량 10% 이내, 167세대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595번지 일원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아파트 1,999세대 신규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배정하오니, 각 기관별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2019년 09월 19일(목) 오전중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건본주택개관	2019.09.20.(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2019.09.18.(수)
특별공급 신청일	2019.09.23.(월)	당첨자 선정일 2019.09.30.(월)
동·호수 발표일	2019.10.01.(화)	
계약체결일	2019.10.15.(화) ~ 2019.10.18.(금)	10:00 ~ 16:00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 및 발표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장애인,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복무 군인, 장기복무 제대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추천하여 당사에 통보한 분(장애인의 경우에도 해당기관(경기도청,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당사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입주자저축 요건 :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하며, 제36조 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1순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청약예금 :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분 (전용면적 기준)	거주지역		
	평택시 /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102㎡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35㎡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또는 그 세대원(배우자를 포함하며,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 또는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후 동시에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여부 판단 대상자의 주택소유 여부에 의거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본다.(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기관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구분		64		84A, 84A-1		84B		84C		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①장애인 (경기도청, 서울시청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	8	3	10	4	3	1	4	1	25	9
	서울시	7	2	9	3	2	-	3	1	21	6
	인천시	7	2	9	3	2	-	3	1	21	6
②국가유공자 등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10	4	15	6	4	1	5	2	34	13
③장기복무 제대군인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5	2	7	3	1	-	2	-	15	5
④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5	2	8	2	2	-	3	1	18	5
⑤ 기타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10	4	15	6	3	1	5	2	33	13
합 계		52	19	73	27	17	3	25	8	167	57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1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 선정
-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일 주택형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세대수로 전환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경과 다음날 소멸됩니다.

■ 구비서류

구분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본인 신청 시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건본주택에 비치, 인터넷 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주민등록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2you.com)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청자 제외)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함.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위임장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본인확인증표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인장	대리인	

■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소개
-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명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공동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대지위치	평택시 지제동 595번지 일원		
건폐율	15.23%	용적률	199.69%
대지면적	112,673.00㎡	건축규모	지하 1층 / 지상 27층 (아파트 19개동, 부대복리시설 6개동, 근린생활시설 3개동)
연면적	319,682.7634㎡	세대수	1,999세대

※ 상기 사업개요는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여지 있음

- 리플렛

posco 포스코건설

바람을 읽습니다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SRT 동탄역 다음! 평택 지제역 바로 앞

문의 **1522.0037**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64㎡·84㎡·115㎡ 총 1,999세대]

한양_평택시 지제동 595번지 일원
모델하우스_평택시 지제동 615-1

전매제한 6개월 9월 오픈 예정

사: KAT 한국자산관리공사 | 사: POSCO 포스코건설 | 사: 신명대학교(별리대주)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SRT / 호신 / KTX(예정) 지제역 앞

